

□ 청탁금지법 Q&A

1	질의	중앙부처의 A 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 실장, C 과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B 실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 내기(더치페이)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답변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2	질의	할인받아 구입한 선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물의 가액은 통상적으로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3	질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직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질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 총액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우리회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대가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5	질의	A는 B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B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공직자 B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6	질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제한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및 우리회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 지침에 따른 사례금 제한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7	질의	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거래업체인 민간업체에서 광고성 물품을 업체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 물품을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질의	교수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식대 지급 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한 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 기간동안 제공되는 모든 식사(4식 및 다과 등)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아침시간과 점심시간 또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음식물의 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1식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산액이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9	질의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실시도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우리회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 지침'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신고 및 제한 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은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하되, 사전 허가(내부결재)는 '대가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외부강의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 등의 실시의 경우 지침 제5조에 의한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후 별도의 그룹웨어 신고 및 외부강의 제한의 대상은 아닙니다.

10	질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원 결혼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답변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11	질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전문점 기프트콘(1만 5천 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답변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	질의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13	질의	공식행사에서 1인 3만원 이내 식비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사안의 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4	질의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 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회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관리지침' 제2조 정의규정 단서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15	질의	서면 평가·심의·자문 등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요?
	답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서면 평가·심의·자문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16	질의	외부 수당 관련하여 강사수당(최대 60만원)은 여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임직원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